『기본강의 헌법』(전정4판, 2017년판, 1쇄) 정오표 최종본(2017 8 14 작성)

- ※ 이후 발견된 정오사항은 12월경 홈피에 게재하겠습니다.

- 저자 金 柳 香

* 제105면 박스 '4·19 민주이념의 계승' 우측 내용 수정

- ■ 제3공(1962년)헌법에서 '4·19의거~에 입각하여'라고 규정. 제5공(1980년)헌법에서 삭제되었다 가 현형(1987년)헌법에서 '4·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'로 처음 명시.
- ★ 제182면 ㅣ. 목차 본문 8줄
 - ~ 정치적·구권적·사회권적 기본권 → ~ 정치적·청구권적·사회권적 기본권
- ★ 제400면 (가) 목차 2문장 보완
 - 여기서 말하는 '법률'이란 입법부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<u>과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긴</u> 급명령·긴급재정경제명령 등을 의미하는 것임은 물론이다.
- ★ 제427면 첫 박스판례 우측 주문 수정
 - ▶위헌 → ▶기각
- ★ 제680면 네 번째 박스판례 제목 변경
 - 학교환경정확구역 안에서의 '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'금지
- ★ 제737면 본문 2문단 1줄 변경
 - 그런데 개별법률에서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면서 어떠한 예외도~
- ★ 제822면 '(나) 헌법재판소의 판례' 부분 맨 뒤에 추가
 - 또한 헌법재판소는 『교사의 교육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』라는 판시도 하였다(2009, 3,26, 2007헌마359).

★ 제1027면 제59조 2호. 3호 본문 '선거일이 아닌 때에' 삭제됨

제59조[선거운동기간]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〈개정 2017.2.8.〉

- 1. 제60조의3(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)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<u>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</u> 하는 경우
- 2.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. 2문 동일
- 3.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·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(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·음성·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, 2문 동일

★ 제1028면 제60조의3 제2항 3호 개정

3.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 〈개정 2017.2.8.〉

★ 제1028면 본문 2문단 3줄 수정

(선거일 제외) → (선거일 포함)

★ 제1135면 제53조 제1항 개정

제53조 (폐회중 상임위원회의 정례회의) ① 상임위원회(소위원회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3월·5월(폐회중에 한정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의 세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 정례적으로 개회(이하 "정례회의"라 한다)한다. 다만, 국회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, 정보위원회는 3월·5월에월 1회 이상 개회한다. [개정 2016 12.16]

★ 제1136면 B. ⑧항 수정

⑧ 정보위원회는 3월·5월(폐회중에 한정)에 월 1회 이상 개회한다(제53조 제1항).

* 제1137면 E목차 4줄 수정

 그리고 폐회중에는 최소한 월 2회 정례적으로 개회한다. → 그리고 <u>3월·5월(</u>폐회중에 한정)<u>의 세</u>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 정례적으로 개회한다.

* 제1140면 박스 '공개여부' - '특별위원회' - '상설' 부분 수정

- 공개원칙(윤리위는 비공개) → 공개원칙(윤리위 징계 비공개원칙)

★ 제1144면 제5조의2 제2항 개정

제5조의2 [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등]

- ② 제1항의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. 〈개정 2016,12,16.〉
 - 1. 2월·4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. 다만, 국회의원총선거가 있는 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.
 - 2.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로,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회기는 30일(8월 16일에 집회하는 임시회의 회기는 8월 31일까지)로 한다.
 - 3.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회기 중 1주는 제1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정부에 대하여 질문을 행하다

★ 제1145면 (가) 집회 및 회기 본문 6~7줄 수정

- 둘째, 국회의 상시운영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회는 <u>2월·4월·6월의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</u>한다(국회법 제5조의2 제2항). 이때에 집회하는 임시회는 회기가 <u>30일(8월 16일에 집회하는 임</u>시회의 회기는 8월 31일까지)로 고정되어 있다.

★ 제1231면 본문 4줄 수정

- (국가정보원장 등에~) → (헌법재판소재판관등에~)

★ 제1253면 제26조 제2항 개정

-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, <u>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</u>한다. 다만,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. 〈단서신설 2016,12,16,〉

* 제1254면 A. 국회의 동의절차 본문 3줄 뒤에 추가

- ~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. 2016.12.16. 국회법은 「다만,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.」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다.

★ 제1336면 2. 목차 본문 마지막줄 수정

- ~ 이를 통보한다. → ~ 이를 통보할 수 있다.

★ 제1372면 본문 4줄 개정

- 행정법원의 6종 → 행정법원·회생법원의 7종

★ 제1375면 제28조 제1호 개정

제28조 (심판권) 고등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. 다만,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. [개정 2016.12.27] [[시행일 2017.3.1]]

1. 지방법원 합의부, 가정법원 합의부, <u>희생법원 합의부</u> 또는 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·심판·결정·명 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

* 제1377면

- 6. 회생법원

법원조직법

제40조의7 (합의부의 심판권) ① 회생법원의 합의부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.

- 1.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회생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
- 2.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
- 3. 회생법원판사에 대한 제척·기피사건 및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관리위 원에 대한 기피사건
- 4. 다른 법률에 따라 회생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
- ② 회생법원 합의부는 회생법원단독판사의 판결・결정・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. [본조신설 2016,12,27] [[시행일 2017,3,1]]

★ 제1377면 '6. 특별법원' → '7. 특별법원'

★ 제1437면 4.항 본문 2~6줄 내용 변경

- "법은 이에 관해 ~ 견해로 하도록 하고 있다." → "법은 이에 관해 직접적으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,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법원조직법 제66조 제2항 '합의에 관한 규정'을 준용하여 신청인에게 가장 유리한 견해를 가진 수에 순차로, 그 다음으로 유리한 견해를 가진 수를 더하여 과반수에 이르게 된 때의 견해를 그 합의체의 견해로 할 수 있을 것이다. 다만 위헌(헌법불합치・한정위헌・한정합헌 등 변형결정 포함)결정 등은 재판관 6인에 이르러야 한다.

★ 제1479면 3번째 박스판례 제목

- 부진정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청구

★ 제1517면 2문단 2줄 변경

- 당해사건에도 → 당해사건이나 병행사건의 경우에도

* 제1517면 2번째 박스판례 제목

 -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불합격처분 → 헌법불합치결정 전에 이루어진 통신제 한조치의 적법성

* 제1528면 마지막 박스판례 위치 이동

- '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탁금' 판례 제1520면 적용증지 헌법불합치 판례로 이동요함

★ 제1538면 2번째 박스판례 번호 수정

- (1993.7.29. 89헌마123) → (2016.10.27. 2014헌마1037)

★ 제1577면 목차 및 내용 변경

- 'C. 보충성의 원칙' → 'B. 보충성의 원칙'
- 'B 행정입법부작위의 정당한 사유' → '(나) 행정입법부작위의 정당한 사유'
 - '(나) 행정입법부작위의 정당한 사유' 내용 1~2줄 수정
 - '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어 야 한다." → "행정입법의무가 존재한다고 하여 곧바로 헌법소원이 인용되는 것은 아니다. 즉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헌법재판소가 위헌확인을 할 수는 없다."
- '(나)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확인한 판례' → '(다)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확인한 판례'

정부조직법 [개정 2017.7.26.]

◇ 주요내용

가.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·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<u>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</u>하는 한편,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(제29조제1항, 제29조제2항 신설).

나.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<u>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</u>하고,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(제34조제1항, 제34조제3항 신설).

다.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<u>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</u>하여 창업·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·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(제44조 신설).

- ◇ 교재수정〈2017.7.26. 개정된 정부조직법, 국회법 반영〉
- * 제1135면 박스 5번째 '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' → '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'로, '미래창조과학부' → '과학기술정보통신부'로 각 변경, 박스 9번째 '안전행정위원회' → '행정안전위원회'로, '국민안전처' 삭제 + '행정자치부' → '행정안전부'로 각 변경.
- * 제1136면 박스 2번째 '산업통상자원위원회' → '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'로 변경하고, 우측 에 '중소벤처기업부' 추가.
- ★ 제1259면 제26조

제26조(행정각부)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. 〈개정 2017.7.26.〉

- 1. 기획재정부 2. 교육부 3.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. 외교부 5. 통일부 6. 법무부 7. 국방부
- 8. 행정안전부 ~ 17. 해양수산부 18. 중소벤처기업부
- ★ 제1260면 박스 '우리 역대 헌법상 권한대행' 중 4줄
 - '미래창조과학부장관' → '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'
- * 제1332면 정부조직법 제22조의2[국민안전처] ⑤ 삭제
- * 제1335면 '2, 행정각부의 장의 이중적 지위' 본문 뒤에 아래 내용 추가 + 정부조직법 제22조의2[국민 안전처] 전체 삭제
 - 그러나 2017.7.26. 개정 정부조직법에서는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<u>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</u>를 신설하고,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였다.
- * 제1337면 정부조직법 제22조의2[국민안전처] ② 삭제
- ★ 제1338면 본문 1~2줄 수정
 - 2017.7.26. 개정된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에는 행정각부의 장을 겸한 국무위원 18명이 있다.